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4월 28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4월 30일 제56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정비국장 이종현)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차장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주차요금 체계의 개편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주차요금 급지의 세분
 - 지하철 환승목적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월정기권)조정
2. 주차요금 감면확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자동차 (안 별표1, 비교6)
 - 경형(800cc미만)자동차 (안 별표1, 비교7)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유제한)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서 주차요금의 체계와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여 요금의 격차가 큰폭이었으나 3급지를 신설하여 2급과 4급지의 중간요금 폭을 줄이고 또한 지하철 환승목적 이외의 차량 주차요금(월정기권) 5만원과 환승의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 4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별표의 5호와 6호, 7호 등은 카풀차의 편익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며, 경자동차 소유자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유류절감 차원도 포함될 것입니다.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년월일 : 1998. 4.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체계 개편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1) 주차요금급지 세분: 4단계에서 5단계로
 - 3급지 신설로 현행 3, 4급지가 개정 4, 5급지로 조정
- 2) 지하철 환승목적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월정기권)조정
 - 개정 4급지(현행3급지)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5만원
 - 환승목적주차시는 현행 4만원과 같음

나. 주차요금 감면확대

-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 (안 별표1, 비고6)
 - 현행 1,2,3,4급지 공영주차장에 대항 50%감면
 - 개정은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1시간 면제, 나머지 시간은 50% 감면(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 면제, 나머지 시간은 80% 감면- 월정기권 포함)
- 2) 경형(800cc미만)자동차 (안 별표1, 비고7)
 - 현행 2, 3, 4급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50% 감면
 - 개정은 2급지 ~ 5급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 면제, 나머지 시간은 80% 감면-월정기권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4조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합 의 사 항 : 없 음

다. 예 산 조 치 : 필요없음

라. 조례개정(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급지	3,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50,000	100,000
2급지	1,500	500	1,000	4,000	-	-	1,500	500	180,000	60,000
3급지	1,000	300	600	3,000	-	-	1,000	300	100,000	40,000
4급지	600	200	200	2,000	50,000	-	500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300	100	100	1,000	30,000	20,000	300	100	30,000	20,000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 이 주차요금은 법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경인로, 선유로, 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
 - 5급지 : (1)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1,2,3,4급지 주차장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들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 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환승 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 나.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4호와 같은 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 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가가 발행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차요금 변경내용
=====

현	개 정 안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노 상 주 차 장</th> <th colspan="4">노 외 주 차 장</th> </tr> <tr> <th colspan="2">2시간까지</th> <th>2시간 초과</th> <th rowspan="2">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th> <th colspan="2">월정기준</th> <th colspan="2">1회주차</th> </tr> <tr> <th>1구획 최초 30분</th> <th>1구획 10분</th> <th>1구획 10분</th> <th>주간</th> <th>야간</th> <th>1구획 최초 30분</th> <th>1구획 10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3,000</td> <td>1,000</td> <td>2,000</td> <td>5,000</td> <td>·</td> <td>·</td> <td>2,400</td> <td>800</td> <td>20,000</td> <td>100,000</td> </tr> <tr> <td>2급지</td> <td>1,500</td> <td>500</td> <td>1,000</td> <td>4,000</td> <td>·</td> <td>·</td> <td>1,500</td> <td>500</td> <td>10,000</td> <td>60,000</td> </tr>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3급지</td> <td>600</td> <td>200</td> <td>200</td> <td>3,000</td> <td>50,000</td> <td>·</td> <td>500</td> <td>200</td> <td>40,000</td> <td>20,000</td> </tr> <tr> <td>4급지</td> <td>300</td> <td>100</td> <td>100</td> <td>2,000</td> <td>30,000</td> <td>20,000</td> <td>300</td> <td>100</td> <td>30,0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p>※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준은 4만원으로 함.</p>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준		1회주차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급지	3,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0,000	100,000	2급지	1,500	500	1,000	4,000	·	·	1,500	500	10,000	60,000	<신 설>											3급지	600	200	200	3,000	50,000	·	500	200	40,000	20,000	4급지	300	100	100	2,000	30,000	20,000	300	100	30,000	20,000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노 상 주 차 장</th> <th colspan="4">노 외 주 차 장</th> </tr> <tr> <th colspan="2">2시간까지</th> <th>2시간 초과</th> <th rowspan="2">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th> <th colspan="2">월정기준</th> <th colspan="2">1회주차</th> </tr> <tr> <th>1구획 최초 30분</th> <th>1구획 10분</th> <th>1구획 10분</th> <th>주간</th> <th>야간</th> <th>1구획 최초 30분</th> <th>1구획 10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2급지</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3급지</td> <td>1,000</td> <td>300</td> <td>600</td> <td>3,000</td> <td>·</td> <td>·</td> <td>1,000</td> <td>300</td> <td>10,000</td> <td>40,000</td> </tr> <tr> <td>4급지</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2,000</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d>(현행3급지와 같음)</td> </tr> <tr> <td>5급지</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1,000</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d>(현행4급지와 같음)</td> </tr> </tbody> </table> <p>※ 5급지</p>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준		1회주차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급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급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급지	1,000	300	600	3,000	·	·	1,000	300	10,000	40,000	4급지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2,000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5급지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1,000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준		1회주차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급지	3,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0,000	100,000																																																																																																																																																					
2급지	1,500	500	1,000	4,000	·	·	1,500	500	10,000	60,000																																																																																																																																																					
<신 설>																																																																																																																																																															
3급지	600	200	200	3,000	50,000	·	500	200	40,000	20,000																																																																																																																																																					
4급지	300	100	100	2,000	30,000	20,000	300	100	30,000	20,000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준		1회주차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급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급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급지	1,000	300	600	3,000	·	·	1,000	300	10,000	40,000																																																																																																																																																					
4급지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2,000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현행3급지와 같음)																																																																																																																																																					
5급지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1,000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4급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p>비고 1~2 (생략)</p> <p>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여의도를 연결한 노들길 및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나. 2급지 : 1급지,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p><신설> 다. 3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지역인 점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써 지정하는 주차장 라. 4급지 : 1)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생략 3) 1~3급지 주차장 중 야간필요를 구별하고 야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야간에 한하여 주차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마. (생략)</p>	<p>비고 1~2(현행과 같음)</p> <p>3. 가. 1급지 : 4급지 및 5급지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 주차장 (지하철 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은 로터리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 (2) (현행 4급지의 2)와 같음 (3) 1,2,3,4급지</p> <p>바. (현행 마와 같음)</p>
<p>4. (생략)</p> <p>5.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출근시간대 3,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이상 탑승한 자동차) 나. 기타 지장이 정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구청장이 도시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가. (생략) 나.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1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p> <p>7. 구청장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형자동차에 대하여 2,3,4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단서신설></p> <p><신설></p>	<p>4. (현행과 같음)</p> <p>5.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 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6.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근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근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p> <p>7. 2,3,4,5급지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정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8.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